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자격 등록 요건 강화 및 평가 실시〉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0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등록요건 구체화(안 제1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민간자격 등록요건을 자격의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 과정 구성의 적정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 --다음-----제 외하고-----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1)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현행 「자격기본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전체 민간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은 총 61,574종으로 이 중 97종이 「자격기본법」 제19조2)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된 민간자격임. 2025년 11월 기준 작년에만 10,014건의 민간자격이 접수되었고, 이 중 7,011건이 실제 등록되었음

<전체 민간자격 현황>

구분		자격종목 수	관련법	자격명칭(예시)
민 간 자 격	등록민간자격	61,574	자격기본법 제17조 (주무부장관)	진로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심리상담사, 필라테스지도자 등
	공인민간자격	97종	자격기본법 제19조 (주무부장관)	TEPS, 도로교통감정사, 지능형홈관리사 등
	계	61,574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11월
접수	9,506	8,323	7,647	8,546	8,077	8,457	8,300	8,196	7,534	7,993	8,767	10,014
등록	6,253	6,521	6,153	6,302	5,849	6,869	6,079	6,056	5,572	6,176	6,398	7,011

자료: 교육부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그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1)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2)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지 않으며, 부정등록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별도의 등록갱신 절차 없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간자격으로서 유효하게 됨. 또한, 「자격기본법」 제18조의3제2항은 민간자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민간자격의 폐지가 가능('24 총 2,132건 폐지)함.

<최근 5년간 등록폐지 민간자격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폐지(건)	2,515	1,987	2,270	2,121	2,132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격의 종목·등급 및 검정기준, 검정과목 등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등 동법 제17조제1항 각 호⁴⁾의 어느 분야가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민

- 3)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현재 없음.

간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자격 등록요건>

법적근거	등록사항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 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간자격의 운영의 가능성 및 활용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신설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민간자격이 현재 등록 건수가 최근 10년간 매년 7,000건을 상회하였으나,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신설,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낮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자격 발급이 금지되는 분야가 되는 경우에도 민간자격관리자가 폐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격이 유지되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일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공신력에 비하여 과도한 홍보를 하거나, 충분한 검정 절차 없이 금전적 대가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른바 “자격증 장사” 등 상업적 운영 사

례5)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의할 때 민간자격 등록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현행 민간자격제도의 자율성, 탄력적 운영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현행 민간자격 제도는 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은 허가제도를 도입할 만큼의 높은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채택하는 제도6)로서, 실제 입법례에서는 그 실질이 신고7)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경우 허가제8)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민간자격제도는 국가자격제도를 보완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직무 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 분야의 자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민간자격 등록 시 실질적인 심사 요건을 규정하는 등 사실

5) 이수민, 김송현, 「“3시간만 들으면 합격증 챙겨”... 스펙 뺑뺑기 중심엔 우후죽순 민간자격증」, 매일경제, 2025.6.8.

김동인, 「돈 주면 따는 자격증 3만4,000개」, 시사IN, 2019.05.23.

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재」

7) 다만, 신고제도는 허가제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한편, 행정청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도록 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가하려는 취지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8)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금지의 해제로서 금지된 자유를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제도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상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자격이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자격 개발과 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민간등록자격은 공인 민간등록자격과 그 외의 등록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인 민간자격⁹⁾은 민간자격 등록 이후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¹⁰⁾에 공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민간자격 중 활용도가 높은 자격에 대하여 공인제도를 통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는 등 관리체계를 이원화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민간자격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간자격제도는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 등록제가 도입되었으나,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2012년 개정되어 사전등록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현행과 같은 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최근의 개정안 발의현황을 살펴보면, 「자격

9) 공인 민간자격은 교육부 소관으로 TEPS영어능력검정(공인기간 2년), FLEX(외국어시험)(공인기간 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공인기간 3년) 등이 있음.

10)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000)은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부과하고,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민간자격 등록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자율 평가를 기본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림청은 등록민간자격은 사업 발전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격이므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법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발의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심사 과정에서 동 개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자료제출, 평가 및 등록취소 등(안 제17조의3)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자격관리자에게 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3(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매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실시 및 자격 발급 현황 2. 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 3. 자격취득자의 자격 활용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자격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부실하게 운영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이후의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자격기본법」 제18조의5¹¹⁾는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이미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민간자격 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열람하여 자격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현재 민간자격 중 부실자격이 난립하거나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의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현재 등록 민간자격은 약 61,000여종으로 모든 민간자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력 및 예산의 소요가 클 것으로 보이며 심사가 형식화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평가의 대상범위와 그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지도·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등록취소 및 과태료(안 제17조의3)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민간자격이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등록자격관리자가 부실하게 자격검정등을 하는 등 그 등록자격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43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u>

	<u>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 「자격기본법」 제18조의3은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금지분야가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나, 개정안은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검정, 응시자격 등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된 사항과 달리 민간자격이 운영되는 경우, 예컨대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다만, 「자격기본법」 제27조¹²⁾에 따라 공인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 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게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12) 「자격기본법」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